

「예산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18. 5. 9. 개정 판 (시행 2018. 6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28/compare?from=329&to=87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19:5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예산편성지침)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	제8조(예산편성지침) 예산편성부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-05-09>
제9조(예산요구서 제출)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예산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월별사업추진계획서 4. 지출총괄표 5. 수입총괄표	제9조(예산요구서 제출) ①예산집행부서는 해당부서로 하며 당해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예산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<삭제 2018-05-09> 4. 지출총괄표 5. 수입총괄표
제10조(예산의 편성과 확정)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,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.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. <개정 2016-02-29> ③기획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10조(예산의 편성과 확정) ①예산편성부서는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되,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. ②항례적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및 특별사업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별도의 심의를 받는다. <개정 2016-02-29> ③기획처장은 예산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-05-09> ④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⑤기획처장은 확정된 예산의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11조(예산공개)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	제11조(예산공개) 총장은 확정된 예산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공개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-05-09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예산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"4개월"을 "2개월"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"월별사업추진계획서"를 "<삭제 2018-05-09>"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예결산위원회"를 "예산위원회"로 하고, "한다."를 "한다.<개정 2018-05-09>"로 한다.

제11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"를 "교육부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